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정부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한 통합활용정원에 시행에 따라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99. 99. ~ 99. 9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67”을 “69”로 하고, 일반직 계 “66”을 “68”로 하며, 행정
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4”를 “25”로 하고,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3”을 “2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
는 정원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7</u>	<u>69</u>	+2
·	·	·	
·	·	·	
일반직 계	<u>66</u>	<u>68</u>	+2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 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24</u>	<u>25</u>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 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 는 방송통신주사	<u>23</u>	<u>24</u>	+1
·	·	·	
·	·	·	